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660호
----------	-------

2017. 09. 11.(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08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08월 24일

다. 상정일자 : 2017년 08월 30일

-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성엽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2조, 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2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('17.12.31.)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
-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
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('18.01.01.~'22.12.31.)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(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내)
- 수탁기관 : 영유아보육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
 - ※ (현)수탁기관 : (사)충북어린이집연합회 '15.01.01~'17.12.31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사 업 비 : 310백만원(국비 50%, 도비 50%)
- 위탁 주요사무
 -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,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,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 -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,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,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 및 보급
 -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,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, 도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,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
 -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)

가. 주요 내용 검토

○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

- 본 동의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,
-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.

○ 종합의견

-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,
-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양한 부분의 정보와 서비스를 보육교직원, 영유아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,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타당함.
- 다만,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철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, 선정 후에도 수시 지도 점검으로 지역의 육아중심 기관으로 명품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보육 및 양육서비스 제공으로 충청도가 보육에 허브가 되도록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할 것임.
※ 전국 16개 광역 시·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 1부.

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
번호

660

제출연월일 : 2017년 8월 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「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」, 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」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('17.12.31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“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”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('18. 1. 1 ~ '22. 12. 31)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(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內)
- 수탁기관 :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자
※ 現 수탁기관 : (사)충북어린이집연합회('15. 1. 1. ~ '17. 12. 31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위탁 주요사무
 -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-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
 -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 -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 -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
 -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 및 보급
 -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
 -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
 - 도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,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
 -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現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

- 센터 설립 경과
 - 2003. 6. 9. :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
 - 2013. 12. 05. :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
- 수탁기관 : (사)충북어린이집연합회('15. 1. 1. ~ '17. 12. 31)
- 사 업 비 : 310백만원(국비 50%, 도비 50%)
- 기관위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(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內)
- 주요업무
 -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-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
 -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 -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 -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
 -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 및 보급
 -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
- 조직·인력 : 11명(센터장1, 보육전문요원4, 대체교사관리자1, 전문상담
요원1, 시간제보육관리자1, 행정원1, 기타 2)

나. 관계법령 : 별첨

-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(업무의 위탁)
-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의 2(업무의 위탁)
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
-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및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
-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-
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

보건복지국
복지정책과

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◇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('17.12.31.)됨에 따라
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.

- 現, 수탁기관 : (사)충북어린이집연합회('17. 12. 31.까지) -

□ 추진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(업무의 위탁)
-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의 2(업무의 위탁)
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
-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및
부칙 제2조(경과조치)

□ 위탁개요

- 위탁기간 : '18. 1. 1. ~ '22. 12. 31.(5년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
- 위탁사업비 : 310백만원(도비 100%) * 연도별 변동가능
- 위탁사무
 -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-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
 -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 -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 -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
 -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 및 보급
 -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
 -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
 - 도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,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
 -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추진절차

① 의회동의	· 추진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의회동의	'17. 9월
② 수탁공고	· 수탁기관 공고 - 방법 : 공개모집(15일 공고) - 자격 :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요건 갖춘 자	'17. 10월
③ 수탁심사	·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- 위원 : 15명 - 심사 : 전문성, 사업실적, 사업계획 등 - 결정 : 최고 득점자 선정	'17. 11월
④ 협약체결	· 협약체결 및 공증	'17. 12월

① 의회동의

- 동의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 4조 제3항

<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③ >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- 동의시기 : 9월 임시회기중

② 수탁공고

- 공고기간 : '17. 10월 (15일간)
- 공고방법 : 도 홈페이지 공고
- 선정방법 : 보육정책위원회 심사·결정 (고득점자 선정)
- 신청자격 :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자

<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>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4.>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2.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
3.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
4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
5.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○ 수탁조건

- 관계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
- 사업공간확보 및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의 수탁기관 부담
- 현직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

③ 수탁심사 (보육정책위원회 개최)

○ 개최시기 : '17. 11월 *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7조

- 구성인원 : 15명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
※ 당연직 1(복지정책과장), 기타(전문가) 14

- 심사항목 :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사회협력 등

○ 계획설명 : 공모기관별 각 20분 이내

○ 수탁자 선정 : 최고 득점기관 수탁관리자 선정, 수탁신청기관이 2개 미만이거나 협약대상자 협약결렬시 재공모

④ 협약체결

○ 체결 시기 : '17. 12월

○ 내용 :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, 업무 인계·인수

□ 향후계획

○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7. 9월

○ 수탁기관 선정공고 : '17. 10월

○ 선정위원회(보육정책위원회) 심의 : '17. 11월

○ 협약 체결 및 공증 : '17. 12월

○ 위·수탁사무 개시 : '18. 1. 1.

<영유아보육법>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., 2013.6.4.>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
 2.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업무
 3.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
 4.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
 5.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1.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
 2.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
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<영유아보육법 시행령>

제26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 2.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
 3.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
 4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
 5.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1.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

2.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
3.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
4.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 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·단체 등(이하 이 조에서 "수탁기관"이라 한다)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,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1.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
 2.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3.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
 4.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,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
 -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, 신청서류,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>

제39조의3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 3. 대표자의 경력사항
 4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 5. 법인·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 6. 법인·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
 7.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(예산서를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
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9.1.>

③ 삭제 <2012.8.17.>

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수탁기관은 법인·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,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변경 사유서

2. 대표자 경력사항(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3.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(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4.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5.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

<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>

제2장 보육정책위원회

제4조(설치)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4. 4. 4>

제5조(구성)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

2. 보육전문가: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

3. 관계 공무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

4. 어린이집의 원장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
5. 보육교사 대표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.

제6조(기능)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
3.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
4.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

제12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3. 30, 2014. 4. 4>

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,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 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7>

④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삭제 <2017. 7. 7>

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17. 7. 7>

<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>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
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